



제434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사회 회의록 공개 및 제출》

■ 김종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881호)

2026. 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 김중양의원 대표발의(제2216881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사회 회의록 공개 및 국회 상임위 제출 (안 제23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2

I. 김종양의원 대표발의(제2216881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종양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2. 19.

다. 회 부 일 : 2026. 2. 20.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있고, 약관 개정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있음.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이사회 회의록에는 안건 주요내용, 참석자 주요 의견, 논의결론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제한적이어서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는 회의록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이사회가 토의내용·의결사항 및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 등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사회 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3. 검토의견

가.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사회 회의록 공개 및 국회 상임위 제출 (안 제23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이사회) ① ~ ④ (생략) <u><신설></u> <u><신설></u>	제23조(이사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⑥ 이사회는 회의의 일시·장소·토의내용·의결사항 및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여야 한다.</u> <u>⑦ 이사회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록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
※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현행법 상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이사회¹⁾는 공사의 업무²⁾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임.

1) 「주택도시보증법」

제23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주택도시보증법」

제26조(업무) ① 공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

2.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하자보수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업무

3. 제2호에 따른 보증을 이행하기 위한 주택의 건설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업무와 구상권 행사를 위한 업무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대한 보증업무

5. 제4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으로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업무

공사는 내부 규정인 「이사회규정」에 근거하여 의사의 안전,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³⁾하고 있음.

이사회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9호에 따라 경영공시 대상⁴⁾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⁵⁾ 및 재정경제부의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⁶⁾에 따라 개인정보 등을 제외하고 안전 주요내용, 참석자 주요 의견, 논의결론을 포함한 이사회 회의록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시하고 있음.

6.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의 수탁
7.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이 위탁하는 업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 및 연구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3) 「이사회규정」 (주택도시보증공사 내부규정)

제10조 (의사록)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전,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사에 비치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경영공시)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분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정관·사채원부, 지침·예규 등 내부 규정 및 이사회 회의록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통합공시)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 제12조에 따른 통합공시의 항목, 기준 및 절차 등(이하 “통합공시기준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통합공시기준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후 변경된 통합공시기준등을 적용하기 14일 전까지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통합공시기준등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경영정보를 공시한다.

6)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재정경제부)

<별표 1> 통합공시 항목별 세부 공시기준

대분류	중분류	항 목	기 준	갱신주기
II. ESG운영	G(지배구조)	30. 이사회	▪ 이사회 회의록 ▪ 개별 비상임이사 활동내용	- 수시공시 * 사유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그런데 개정안은 이사회 회의의 일시·장소·토의내용·의결사항 및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도록 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되고 있는 회의록의 공개 근거를 공사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직접 마련함과 아울러 회의의 전체 내용을 작성한 회의록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기금 심사, 국정감사 등의 과정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심사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6항⁷⁾과 같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⁸⁾에 따른 경영상·영업상 비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⑥ 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밀, 개인정보 등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회의 과정의 전체 내용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회의 운영에 제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하는 방안⁹⁾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9) 「국민연금법」 제103조의2(운용위원회의 회의록) ②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의 경우에는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의 개최일부터 4년이 지난 후에 해당 안건의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공사의 이사회 회의록을 전부 작성·공개할 경우 영업상 기밀, 내부 검토사항 등 비공개 대상 정보가 유출¹⁰⁾될 수 있으며, 이사회 참석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기회를 제한하고 책임 문제를 우려한 소극적 발언 등으로 실질적 토의가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법무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¹¹⁾에 따라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은 법정 의무사항이므로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회의록 공개 범위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는 공개 범위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으며, 공개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비공개로 열람하는 등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경영공시)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분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정관·사채원부, 지침·예규 등 내부 규정 및 이사회 회의록

1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 ②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그 기록물의 원활한 생산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회의록의 작성·관리)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5.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문 의 처
02)6788-5574